

# 어르신의료복지시설 운영(요양)

## 1 기본 현황

### □ 사업개요

회 계	일반회계		
사업기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연례반복		
사업내용	○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요양시설 운영을 지원		
사업비 (당해년도)	6,250,733천원	[국비]	[사비]6,250,733천원
		기타 (예산 외) [구비]	[기타]

### □ 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복지정책실	어르신복지과	김영란 2133-7400	송미정 2133-7423	김진영 2133-7438
복지정책실	어르신복지과	김영란 2133-7400	송미정 2133-7423	유형 2133-7427

※실국 및 부서명은 예산서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## 2 예산 설명

### □ 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	2018예산액 (A)	2019예산액 (B)	증감 (B-A)	(B-A)*100/A
계	(x-) 6,730,534	(x-) 6,250,733	(x-) △479,801	(x-) △7
사무관리비	(x-) 0	(x-) 50,000	(x-) 50,000	(x-) 0
민간위탁금	(x-) 2,776,675	(x-) 2,395,685	(x-) △380,990	(x-) △13
사회복지사업보조	(x-) 3,953,859	(x-) 3,805,048	(x-) △148,811	(x-) △3

□ 산출근거

과목구분	2019년 예산내역	
사무관리비	○ 서울형 인증 지표 개발 50,000,000원	= 50,000천원
민간위탁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시립노인요양시설(11개소) = 2,395,685천원</li> <li>- 등급외 요양수가 지원 32명*60,880원*365일 = 711,079천원</li> <li>- 비급여액(식비)지원 560명*1,000원*365일*3식 = 613,200천원</li> <li>- 춘계부식비 및 김장비 560명*14,000원 = 7,840천원</li> <li>- 추가 인건비(5명) 175,369,000원 = 175,369천원</li> <li>- 종사자처우개선비 669,600,000원 = 669,600천원</li> <li>- 갈곳없는 어르신 보호 = 74,877천원</li> <li>▷ 등급외 요양수가 지원 3명*60,880원*365일 = 66,664천원</li> <li>▷ 비급여(식비)지원 3명*2,500원*365일*3식 = 8,213천원</li> <li>- 위문금 지원 560명*10,000원*4회 = 22,400천원</li> <li>- 학대피해노인 일시보호(중계, 엘림) 50명*60,880원*30일 = 91,320천원</li> <li>- 시설 종사자 워크숍 = 30,000천원</li> <li>▷ 시설종사자 교육비 1,000명*15,000원 = 15,000천원</li> <li>▷ 시설종사자 연수비 1,000명*15,000원 = 15,000천원</li> </ul>	
사회복지사업보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구립 법인 노인요양시설(69개소) = 3,025,048천원</li> <li>- 등급외 요양수가 지원 30명*60,880원*365일 = 666,636천원</li> <li>- 비급여액(식비) 지원 1,400명*1,000원*365일*3식 = 1,533,000천원</li> <li>- 춘계 부식비 및 김장비 850명*14,000원 = 11,900천원</li> <li>- 종사자처우개선비 604,800,000원 = 604,800천원</li> <li>- 갈 곳 없는 어르신 보호 = 174,712천원</li> </ul>	

과목구분	2019년 예산내역		
	▷ 등급외 요양수가 지원 7명*60,880원*365일	=	155,549천원
	▷ 비급여(식비)지원 7명*2,500원*365일*3식	=	19,163천원
	- 위문금 지원 850명*10,000원*4회	=	34,000천원
	○ 노인요양시설 인증 780,000,000원	=	780,000천원

### 3 사업 설명

#### □ 사업목적

- 65세 이상 저소득 및 거동불편 어르신을 요양시설에서 거주하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노후의 안정된 생활 도모에 기여

#### □ 사업근거

- 노인복지법 제 47조(비용의 보조) 및 동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(비용의 보조)
- 2018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(보건복지부 지침)
- 2018년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지원 계획(어르신복지과-3650,'18. 2. 23.)

#### □ 사업내용

- 사업기간 : 2019. 1 ~ 12월
- 지원대상 : 노인요양시설 80개소 지원
  - 총 525개소 중 시립,구립,비영리법인 운영시설에서 수급자 보호 시
- 지원내용
  - 요양보험제도 시행('08. 7월) 이전 입소 등급외자 지원 3등급 요양급여
    - 등급외자수가 지원비 : 60,880원/일(3등급 수가. '18년 55,780원 대비 평균 상승치 9% 상승 반영)
  - 입소자 중 기초수급자 비급여 항목(식비 등) 지원
    - 입소자 중 기초수급자 비급여 항목(식비 등) : 1인 1식 1,000원
    - 위문금 : 분기별 1회 10,000원(설날, 어버이날, 추석, 연말)
    - 춘계부식비 : 1인 연간 7,000원
    - 김장비 : 1인 연간 7,000원
  - 시립시설 추가 지원 종사자 인건비: 3개소, 5명
  - 갈곳없는 어르신 보호: 등급외자 요양수가 및 비급여(식비)

- 종사자 처우 개선비
  - 기초수급자우선입소시설(16개소) 및 시립노인요양시설(5개소) 종사자
- 종사자 워크샵

**추진경위**

-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('08. 7월) 관련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예산조치 계획(2008.7.4.)
- 갈 곳 없는 등급외 판정 기초수급자 어르신 보호(2011.8.11.)

**2019년도 추진일정**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6,250,733	
기본계획 수립	2019.01~2019.02		
보조금 신청 및 집행	2019.02~2019.12	6,250,733	분기별 교부

**4** 사업효과

**최근 3년 추진실적**

2016년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요양시설 74개소 운영비 지원</li> <li>○ 노인요양시설 인증 확대 실시</li> <li>- 기존 10인이상시설 →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(10인미만 시설)까지 확대</li> </ul>
2017년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요양시설 77개소 운영비 지원</li> <li>○ 서울형 인증시설 지원강화책 마련(지원금 증액, 용도확대)</li> </ul>
2018년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요양시설 77개소 운영비 지원</li> </ul>

**향후 기대효과**

- 어르신 의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시설운영 지원
- 무의탁 저소득 어르신을 보호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노후의 안정된 생활 도모

**5** 최근 3년 결산 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최종예산	전년이월	예산변경	예산현액	집행액	차년이월	집행잔액
2015	(x-) 5,990,000	(x-) 0	(x-) 0	(x-) 5,990,000	(x-) 5,299,000	(x-) 0	(x-) 691,000
2016	(x-) 6,050,000	(x-) 0	(x-) 0	(x-) 6,050,000	(x-) 5,324,000	(x-) 0	(x-) 726,000
2017	(x-) 6,105,000	(x-) 0	(x-) 0	(x-) 6,105,000	(x-) 5,372,000	(x-) 0	(x-) 733,000